대리처방

보건복지부 고시(제2013-192호)

• 대리처방사유 : 재진으로 아래의 사유로 받는 경우 인정

안되거나 하진않겠지요? 따로 코드를 넣거나해야하나요?

- ▲ 동일 상병 ▲ 장기가 동일 처방
- **■** 0/1년 0년/10
- ▲ 환자 거동 불능
- Q. 아버지가 구치소수감되어서 아버지 약처방을 대리처방받겠다 하는데 구치소 수감되어 있는지... 확인을 어찌하나요? 확인되면 처방되는지요?

▲ 주치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당 수가 산정(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%)을 인정"

안됩니다.

Q. 부득이한 대리처방시에 청구는 어떻게하나요? 구치소계신분이고 증명서해오셨길래 급여해드렸는데 혹시 청구가

구치소안에도 의사들이 있고, 함부로 약물 반입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위의 3가지 조건이 맞으면 4항의 주치의 인정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, 접수때 대리처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교정시설에 도서, 의약품의 반입도 가능합니다. 다만, 반입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수용기관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라는 문구로 봐서는 구치소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을때만 가능 할것 같습니다.